

공공기록물의 평가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선별 방식 및 가치 범주를 중심으로 -

김명훈**

- | |
|--|
| 1. 머리말 |
| 2. 평가의 기본 구조 |
| 3. 현행 평가체제상의 중심 요소 |
| 1) 분류기준표 2) 수집정책 3) 평가분류 |
| 4. 평가의 준거 |
| 1) 가치의 범주 2) 가치의 적용 방식 |
| 5. 맺음말 |

1. 머리말

평가(Appraisal)는 일정 기준에 따라 일정 기록물을 선별하는 합목적

* 본고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기록관리법령분석 프로젝트에 제출된 평가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중국어중심 연구원

주요논저: 「1930년대 중국 大農經營의 一事例 분석: 북만주지역의 大農을 중심으로」, 『經濟史學會發表論文』, 2000 ; 「북만주 농촌의 사회구성 변화동인 분석: 계층이동 상황 및 그 요인 검토」, 『中國史研究』, 16, 2001 ; 「기록물의 평가」, 『기록관리법에 대한 기록학적 분석 연구』, 2002.1

적 행위이다. 가치있는 기록물을 선별하는 행위의 시초는 가치없는 기록물을 폐기하는 관행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폐기의 관행은 다수의 불필요한 복본 내지 사본의 존재 및 기록정보가 지닌 시효성의 한계에서 그 정당성을 얻는 것으로,¹⁾ 이러한 면에서 평가는 역사와 함께 시작된 인류의 원초적 행동양식 중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기준에 따른 특정 기록물만을 선별한다는 평가 개념은 기록물의 양적 확대와 그 맥을 함께 한다. 20세기 이후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며 기록물의 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록물의 보존 및 이에 수반되는 적정 비용과의 사이에 한계효용법칙(Rule of Marginal Utility)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기록물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일반적 기준 및 구체적 방법론 개발로 이어졌다. 이를 감안할 때, 현대적 의미의 평가란 기록물에 내재한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구보존 내지 기타 기록물 처리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²⁾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의미의 평가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이하 법령 약칭) 제정 이후라 할 수 있다. 물론 현행 법령 이전 「정부공문서규정」 및 「공문서분류번호및보존기한표」 등의 장치를 통한 영구문서의 선별논리는 존재하였지만, 선별의 근거 및 절차, 방법론 등의 면에서 기록학 이론상의 평가 개념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구체적 가치기준 및 방법론을 명문화함과 더불어, 평가를 기록물관리체제상의 유기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의 평가 규정은 분명 이전의 기록

1) Boles, Frank & Young, Julia Marks, *Archival Appraisal*, Neal-Schuman Publishers, Inc. : New York, London, 1991, p. 3.

2) Bellardo, Lewis & Bellardo, Lynn Lady, *A Glossary for Archivist,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s Manager*, SAA: Chicago, 1992, p. 3 ; Walne, Peter, *Dictionary of Archival Terminology(2nd Revised Edition)*, New York, London, Paris, Munchen, 1988, p. 4.

관리법령과는 차별화를 지향하는 현행 법령이 지닌 개혁적 의도이다.

기실 평가는 기록학의 학문적 본질을 규정하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모든 기록물을 보존하는 것은 모든 기록물을 폐기하는 것’이라는 역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가치있는 기록물을 선별하여 후대의 활용을 도모하는 행위로서의 평가는 기록학의 근본 목적중의 하나임이 자명하다. 또한 현대 기록관리의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보존과 비용’의 함수논리를 염두에 둘 때, 선별의 범위 및 방식을 규정하여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국내 기록학계에서도 평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현행 법령 제정을 즈음하여 공간된 연구성과로는 우선 김익한(1999)³⁾을 들 수 있다. 평가에 대한 개념조차 아직 도입되지 않은 당시의 상황에서 제출된 국내 학계의 선구적 연구성과라 할 수 있는 본고는, 서구의 평가이론 사조 및 각 주류 이론이 지닌 의의 및 한계를 세밀히 분석한 후, 현대 기록관리체제와 평가와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 이상민(2001)⁴⁾은 ICA에서 발행된 IRMT 시리즈를 기반으로 최근의 평가이론 동향을 영역별로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현행 평가체제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내 최초의 기록학 개론서라 할 수 있는 이원규(2002)⁵⁾는 현행 법령 속에 함축되어 있는 고도의 전략적 개념들을 심도있게 도출함으로써, 법령에 내재된 평가논리를 조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다. 공간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개최한 ‘평가분

3) 김익한, 「기록물 관리체제론 및 평가분류의 새로운 흐름」, 『기록보존』 제11호, 1998.

4) 이상민, 「연구보존문서의 선별과 가치평가」, 『기록보존』 제14호, 2001.

5) 이원규, 『한국 기록물관리제도의 이해』, 서울, 진리탐구, 2002.

류워크샵' 자료⁶⁾ 또한 평가와 관련된 귀중한 연구성과이다. 관련 연구자 및 실무자의 연구물로 집적된 본 자료는 종전의 평가체제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향후 평가체제의 구상에 이르기까지 일별함을 통해, 현행 평가제도의 자리매김 및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우리 학계의 논의를 한단계 도약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현행 법령상의 평가방식을 기록학 이론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법령 속에서는 '평가'란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전문관리기관의 업무영역으로 '평가분류'란 용어를 도입하고 있지만, 항구적 보존대상에 대한 보존전략상의 개념임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이들 대상의 선별논리로 귀결될 수 있는 원론적 의미의 평가와는 일정 정도 차이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현행 법령이 의도하는 평가논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록학 이론상의 평가논리와 상호 비교,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외국 이론에 대한 분석이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함임을 감안할 때에도 본고에서 책정한 연구방향은 나름의 당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현행 법령 속에 내재되어 있는 평가방식을 세부적으로 파악함과 더불어 그 방식상의 적합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평가의 기본적 구도로 파악할 수 있는 선별방식 및 가치범주를 내용상의 큰 틀로 설정한 후, 평가이론과 현행 법령상의 관련 조항들을 병렬적으로 분석하는 기술방식을 취하였다. 선별의 기본 구도는 라이프사이클(Life-Cycle) 이론과의 결합 위에 성립된 셀렌버그식 선별체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치의 범주로는 최근까지 전개되어 온 관련 이론들을 일반화시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지

6) <http://www.archives.go.kr>의 '행사'란 참조.

면 관계상 평가를 영구기록물의 선별(Selection) 측면에 한정해 고찰하였음을 밝히며, 향후 비판적 분석을 위한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2. 평가의 기본 구조

현대 기록물관리체제하의 전형화된 평가구조는 기록물의 가치개념 및 라이프사이클 이론과 그 맥을 함께 한다. 기록물의 가치개념은 항구적 보존의 근거를 해당 기록물에 내재하는 고유의 가치에서 구하는 것이며, 라이프사이클은 생산 이후 기록물은 ‘활용 - 준활용 - 비활용’ 단계를 거치며 비활용단계에서 기록물의 가치가 새롭게 재생산된다는 가치의 순환논리이다. 이러한 두 이론을 근거로 기록물관리체제는 ‘생산기관-중간기록물관리기관-최종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로 구성되며, 생산기관과 중간기록물관리기관 사이에 설정되는 준활용단계에서 1차 평가를 그리고 중간기록물관리기관과 최종기록물관리기관 사이의 비활용단계에서는 2차평가를 실시하는 두 단계의 평가체제를 구축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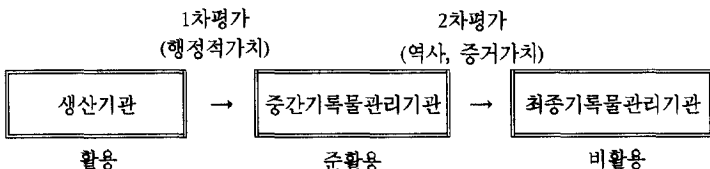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1차평가 단계에서는 생산자 측면에서의 활용 및 업무참고 정도를 측정하는 행정적 가치를 중심으로 기록물이 선별되며, 2차평가 단계에서는 생산기관에서의 활용이 종료된 기록물에 대한 연구 및 기타 이용가치를 기준으로 선별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해당기록물에 대한 생산기관 차원의 활용도를 나타내는 활용, 준활용 및 비활용이라

7) 바우어(Philip G. Bauer), 부룩스(Philip C. Brooks) 및 이를 계승한 쉘렌버그(T. R. Schellenberg)로 대표되는 미국 국립기록청학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평가체제에 대해서는 김익한, 「기록물 관리체제론 및 평가분류의 새로운 흐름」, 62~68쪽을 참조. 한편 준활용단계에서의 1차평가 및 비활용단계에서의 2차평가와 관련된 가치의 범주는 시기 및 지역에 따라 세부적 기준에 다소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치기준의 차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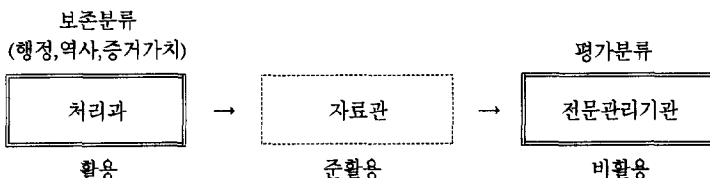
는 명확한 단계구분을 토대로 한 것으로, 여기서 중간기록물관리기관은 각 기관의 생산기록물과 최종기록물관리기관의 영구기록물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평가의 실질적 주체를 담당하게 된다.⁸⁾

〈표 1〉 평가체제의 기본구조

1. 기록물관리 3단계론



2. 현행 법령



이러한 체제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령상의 평가구조는 다소 상이한 형태를 보여준다. 〈표 1〉에 제시된 바대로, 현 법령상의 선별절차는 대략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최초의 기록물 선별단계는 생산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존기간의 산정이다. 이는 분류기준표상의 단위업무별 보존기간 규정을 참고로 하여 생산 담당자인 처리과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유한보존 기록물의 폐기 및 준영구이상 기록물에 대한 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사항이 결정된다는 면에서 항구적 보존

8) 이에 대해서는 같은 글, 67쪽을 참조.

대상을 선별하는 행위로서의 평가를 사실상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관리기관의 선별작업은 기본적으로 분류기준표의 보존분류사항 제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해당기관 업무의 구조, 기능 등에 대한 상세한 사전분석을 통해 단위업무별 보존기간 및 보존장소, 매체 등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항구적 보존을 담당하는 전문관리기관 시각의 선별대상을 한정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요 역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더불어 분류기준표상의 보존기간 변경 및 생산의무 부과 등을 통해서도 항구적 보존대상의 선별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현행 법령상의 영구기록물 선별구조는 그 형태면에서 처리과와 전문관리기관을 주축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간기록물관리기관격으로 볼 수 있는 법령상의 자료관 역할 규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단체, 각급 교육청 및 군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능적으로 분산화된 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자료관의 역할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관되는 유한보존기록물 및 일부 준영구이상 기록물의 수집·보존업무와 보존기간 만료후의 폐기업무 그리고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등 주로 의무적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유한보존이나 이용창구로서의 업무 등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후술할 바대로, 자료관의 폐기업무에서도 영구대상의 선별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아무튼 전통적으로 중간기록물관리기관의 핵심 업무인 영구대상의 선별기능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법령상의 역할규정은 당해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업무활용 및 각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생산자 중심의 기록관리업무를 도모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지만, 한편으로는 중간기록물관리기관의 설

림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하기 힘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며 현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상으로도 볼 수 있다.⁹⁾

양자를 주축으로 한 이러한 평가체제의 중심점은 다음 아닌 분류기준표이다. 현행 법령상의 평가업무는 분류기준표를 매개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전문관리기관에서는 해당 처리과에 대한 업무 분석을 통해 분류기준표를 제정함으로써, 생산기록물을 기능적으로 집단화시킴과 더불어 각각의 기능에 대한 중요도 판단을 자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처리과에서는 이러한 분류기준표를 근간으로 보존기간 산정 및 변경신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분류기준표에 제시된 보존분류 항목에 따라 처리과의 생산기록물은 공식화된 시기 및 절차에 입각하여 자동적으로 수집·이관이 행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항구적으로 보존할 대상만이 전문관리기관에 이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분류기준표를 기반으로 한 현행 평가체제는 생산부터 선별, 수집·이관, 보존에 이르는 전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메카니즘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순환적 업무흐름의 이러한 평가체제는 최근의 기록관리 추세와도 부합된다. 행정기구의 복잡화, 다변화 및 이에 따른 기록물의 유기적 조직화, 양적 질적 다원화는 처리일정표 등과 같은 장치를 통해 생산단계부터 기록물의 향후 처리일정을 조율하는 체제로 변화시키고 있다.¹⁰⁾ 특히 기록물에 내재한 유기적 구조 및 상호 연계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평가사조는 선별과 관련된 전통적인 중간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희석시킨다. 주지하다시피, 쉘렌버그의 이론에 기반한 기록관리

9) 이원규, 「공공기록물의 수집·이관과 아키비스트의 역할」 『기록학연구』 제2호, 2000, 9~10쪽.

10) 김익한, 「기록물 관리체제론 및 평가분류의 새로운 흐름」, 67~68쪽.

체제에서는 레코드관리(Record Management) 단계와 아카이브관리(Archive Management) 단계가 명확히 구분된다. 이는 레코드와 아카이브의 개념을 분리시킨 셸렌버그의 가치이론에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아카이브는 생산목적과는 별개의 향후 연구·이용가치를 지닌 기록물로 레코드와 구별되며, 따라서 준활용과 비활용단계 사이에서 이러한 성격의 아카이브를 선별하여 한정시키는 작업이 중간기록물관리기관의 중요 역할로 규정되어 왔다. 이에 반해 기록물의 유기성 내지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평가이론에서는 해당 기록물이 지닌 독자적 가치보다는 생산배경이나 기능, 구조 등에 대한 분석이 평가업무의 기저를 형성한다. 이러한 작업은 기록물의 생산 이전 해당기관 및 특정 사안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완료되는 것으로, 따라서 전통적 체제하에서 중간기록물관리기관이 지녀왔던 기존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처리과와 전문관리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현행 구조하에서는 활용과 준활용단계 사이에서의 생산자적 가치와, 준활용과 비활용단계 사이에서의 이용자적 가치가 해당 기록물에 동시에 투영되며, 아키비스트의 역할 및 권한으로 인식되어 온 선별작업은 외형상으로나마 처리과의 기록물생산자에게 위임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선별구조는 아래에서 기술할 법령상의 중심 요소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3. 현행 평가체제상의 중심 요소

1) 분류기준표

중간기록물관리기관의 선별기능을 축소한 현행 체제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선별의 주제문제와 관련된다. 기존의 이론에 따르면

영구기록물을 선별하는 평가업무는 아키비스트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되어왔다. 아키비스트는 행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역사적 훈련, 기타 연계학문에 대한 교육 등을 바탕으로 향후의 연구, 이용 등에 관련된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비활용단계의 기록물에 대해 새로운 생명력을 창출한다는 평가의 실질적 담당자로 자리해왔다.¹¹⁾ 이에 반해 현행 법령에서는 선별행위의 실질적 담당자를 기록물 생산의 주체인 처리과로 설정하고 있다. 앞서 살핀바 대로, 처리과에서 시행하는 보존기간 산정업무가 항구적 보존대상을 선별하는 사실상의 업무단계임을 염두에 둘 때, 처리과는 기록물의 실제 생산자임과 동시에 선별행위자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양면성은 곧 선별에 반영되는 가치문제로 귀결된다. 생산자의 선별은 물론 행정적 시각을 통한 생산목적 본래의 가치를 투영시킬 수 있는 강점을 지니지만, 역으로 역사적 가치 등 향후 이용적 측면의 2차적 가치를 결여하기 쉬운 측면 또한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는 장치 중 하나는 보존기간의 기준을 제시하는 분류기준표의 제도적 구상 속에 포함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분류기준표는 처리과별 생산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및 보존방식 등의 처리 일체를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류기준표상의 보존기간은 처리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관리기관이 책정한다는 점에서 기록물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전 합의적 성격을 띄며, 또한 해당 처리과 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전조사 및 업무분석 단계를 거쳐 전문관리기관이 제정 및 개정, 변경 권한을 지닌다는 점에서 항구적 보존대상을 담당하는 전문관리기관의 선별의지를 강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논리를 지닌다. 따라서 분류

11) Schellenberg, T. R.,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Chicago University Press : Chicago, 1975, pp. 119~131.

기준표상의 기준제시를 참고해 처리과에서 시행하는 보존기간 산정은, 법령시행 이전 행정적 시각 위주의 영구문서 선별관행을 방지하며, 생산자적 시각과 함께 전문관리기관 시각을 병행하여 반영시킬 수 있는 평가구조를 이루게 된다.

분류기준표는 평가에 연계된 각종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우선 처리과별 단위업무를 운영상의 기본단위로 채택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기록물관리 전과정을 통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며, 출처 및 기능에 따른 기록물분류를 지속적으로 수행케 한다. 또한 각 기관의 단위업무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전산등록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정리(Arrangement)와 더불어 향후 기록물관리 각 단계마다 생성되어야 할 목록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종래의 보존기간별 편철방식을 지양하고 단위업무 내의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순서별 편철을 유도함으로써 원질서원칙에 따른 물리적 유지를 가능케 한다.

분류기준표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체제에서는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가 동시에 평가된다. 활용과 준활용, 준활용과 비활용단계 사이의 기관역할 및 가치기준에 대한 엄격한 구획선을 긋는 전통적 이론과 달리, 현행 평가체제에서는 생산단계 및 생산기관 자체에서 1, 2차가치를 모두 투영시킬 수 있으며, 영구문서의 선별 또한 비활용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활용기록물에 대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활용성과 영구보존성의 동시 평가는 기록물관리 전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킨 관리연속성(Continuum of Care)의 원리를 토대로 한 현대 기록물관리체제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이며,¹²⁾ 또한 기록물을 하나의 물리적 실체로서보다는 내용, 조직구조, 생산배경이 하나로 통합된 논리

12) 이상민, 「영구보존문서의 선별과 가치평가」, 93~95쪽 ; 오향녕, 「평가를 축으로 한 기록물 통합관리체계」 『기록물평가분류워크샵자료』, 2001, 1~3쪽.

적 실체로 파악하는 최근의 이론적 동향¹³⁾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활용, 준활용, 비활용 단계가 혼합되는 이러한 구조는 중간기록물관리기관의 선별기능이 축소된 현행 평가체제에서도 1, 2차가치를 모두 반영할 수 있게 하며, 생산시점부터 기록물의 생산배경 및 출처, 기능 구조를 유지시켜 항구적 보존기록물의 유기성을 증진시키는 효과 또한 유발시킨다.

2) 수집정책

선별과 관련하여 분류기준표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고안은 현행 법령상의 수집조항 속에 내재되어 있다. 중요기록물의 선별과 관련된 수집역할의 중시 경향은 최근의 기록관리체제에서 나타나는 추세중의 하나이다. 생산제어개념의 도입과 함께 ‘생산-활용-처리’의 일관된 조직화를 지향하는 현대 기록물관리체제에서는 수집정책이 기록물에 대한 선별의 틀을 제공하는 평가의 전단계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¹⁴⁾ 항구적 보존기록물의 내용적 범주 및 전체 구조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⁵⁾

중간기록물관리기관의 선별기능이 축소된 현행 평가체제에서 항구

13) 이에 대해서는 이승익, 「한국 공공분야 기록보유(Recordkeeping) 체제 전망-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도적 의의와 특성-」 『기록학연구』 제4호, 2001, 44~45, 51~52쪽을 참조.

14) Ham, F. Gerald,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SAA : Chicago, 1993, p. 15.

15) 최근의 다큐멘테이션전략(Documentation Strategy), 기능평가(Macro-Appraisal) 등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수집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는 Philips, Faye, *Developing Collecting Policies for Manuscript Collections*, *American Archivist* 47(2), 1984; Reed-Scott, Jutta, *Collection Management Strategies for Archivists*, *American Archivist* 47(2), 1984; Endelman, Judith E., *Looking Backward to Plan for the Future: Collection Analysis for Manuscript Repositories*, *American Archivist* 50(3), 1987을 참조.

적 보존기록물을 전담하는 전문관리기관의 수집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측면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점은 우선 수집제도를 총괄하는 제도적 장치인 분류기준표의 운용논리에도 여실히 반영된다. 국립기록청의 사후 승인하에 생산기관별로 작성권한을 지닌 미국의 기록물처리일정표(Records Schedule)의 경우와는 달리, 현행 법령에서는 분류기준표의 제정권한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및 특수기록물관리기관과 같은 전문관리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기록물관리 전반을 조율하는 분류기준표의 통일적 운영을 기획한 의도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처리과의 생산자적 시각에서 도의시되기 쉬운 역사 및 향후 이용가치를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시킴과 아울러, 중요기록물을 수집하려는 전문관리기관의 정책적 의지를 기록물관리의 총괄적 견지에서 투영시키려는 의지 또한 함유하는 것이다.

분류기준표의 효력 역시 수집역할의 강화요소로 볼 수 있다. 분류기준표상의 보존기간은 표면적으로는 기준제시 성격에 불과하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문관리기관의 선별의지를 암시하는 예고성 및 이관의 강제성을 함축하고 있다. 분류기준표상에 준영구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비치기록물, 사료적 성격이 미약한 대체보존기록물 등 자료관에서도 영구보존이 가능한 기록물 및 이관연기기록물, 비밀기록물 등 일정사유를 지닌 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대상에 포함되며, 또한 분류기준표상의 보존기간과 처리과에서의 실제 보존기간 산정이 상이한 경우에도 일단 재심사를 위해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되는 등, 분류기준표는 전문관리기관의 수집의지를 관철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생산현황보고는 전문관리기관의 수집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수집역할 강화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한다. 기록물등록대상 및

배부대장, 기록물철등록부를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받는 생산현황보고를 통해, 전문관리기관에서는 기록물의 생성단계부터 해당기록물에 대한 상세 정보의 파악이 가능케 되어 고의누락이나 은폐, 훼손, 멸실 등의 부작용없이 중요기록물의 원천적 확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전산관리자료를 통해 개별기록물에 이르기까지 추적하여 수집할 수 있게 된다.¹⁶⁾ 생산현황보고의 제출시기 또한 전략적 발상이 내재되어 있다. 생산현황보고의 제출시한은 처리과에서 자료관으로는 정리연도 5월 31일까지, 그리고 자료관에서 전문관리기관으로는 정리연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전문관리기관에서는 기록물 실물이 이관되기 9년전에 해당기록물의 구체적 수량 및 매체종류, 보존처리방식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전문관리기관에서는 전체적 선별방침 및 현재의 보존역량 등을 고려한 치밀한 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결국 항구적 보존대상의 선별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집대상 및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

수집의 범주 역시 전문관리기관의 적극적 선별의지를 반영한다. 법령의 제·개정 및 중요정책사안, 기타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은 의무적으로 생산토록 법령에 명문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록물에 대해서는 처리과의 보존기간 산정시 영구로 책정토록 규정함으로써 중요기록물을 원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역사자료로서의 성격을 지닌 기록물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생산을 강제시킴과 더불어 분류기준표상의 기준이나 처리과의 보존기간 산정과 상관없이 직접 보존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심지어는 특정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변경하여 수집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공공적

16) 이원규, 『한국 기록물관리제도의 이해』, 234쪽.

성격이 제한적인 중요기록물도 미리 분류기준표에 반영하여 수집대상
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인이 보유한 사적소유 기록물조
차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물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록물로 지정하여 수집하는 등, 항구적
보존가치를 지닌 기록물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망라
하여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3) 평가분류

이처럼 분류기준표 및 수집정책 등의 장치를 통해 선별의 기능을 대
행시키는 가운데, 전문관리기관의 실질적 자원은 중요기록물의 항구적
보존전략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실현시키는 장치
는 바로 전문관리기관의 고유 업무로 설정된 평가분류이다.¹⁷⁾ 기록정
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생산방식이나 보존처리 방식은 다
양하게 변화하는 반면, 중요기록물의 항구적 보존은 이에 수반되는 비
용과의 함수논리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평가를 통해 선별된 영구기록
물의 가치를 재창출하기 위해서도 해당 기록물의 상태 및 내용적 유기
성을 구조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
에 둘 때, 현행 법령상의 평가분류 조항은 전문관리기관의 다양한 역할
중 전략적 지위를 보유하는 핵심업무로 파악할 수 있다.

17) 현행 법령상 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에서 소장 가능한 준영구이상 기록물에 대
해서는 평가분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대상은 역사적 가
치가 높지 않은 비치기록물, 대체보존기록물 및 준공공적 성격의 기록물과 같
이 주로 업무참조나 민원열람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미시적 내용
분석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대상을 선별하여 보존 분담을 의도한 것이기 때
문이다. 단 이러한 성격의 기록물중 역사적 가치가 높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기능에 속할 경우에는 분류기준표상의 보존장소 책정을 전문관리기관으
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법령상 평가와 보존전략과의 연계구상은 기록물의 생산단계부터 행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선 기록물의 생산단계에서 행해지는 보존기간 산정시 보존방법과 보존장소를 함께 선정토록 함으로써 기록물의 중요도에 따른 보존전략을 차별화시키고 있다. 보존기간이 준영구 및 영구로 책정된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항구적 보존시설을 구비한 전문관리기관으로 보존장소를 지정함과 함께,¹⁸⁾ 기록물의 중요도, 활용도 및 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며 매체수록 등 보존방식을 달리한다. 또한 준영구이상 기록물에 대해서는 종이, 잉크, 필기구 등의 기록재료 사용을 법령상에 직접 명시해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중요기록물의 항구적 보존을 생산시부터 시도하려는 의지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령상의 장치들은 분류기준표의 제정과정에서 파악된 당해업무 및 기록물의 특성, 가치 등을 근거로 생산단계부터 준영구이상의 기록물보존에 차별적 전략을 기함으로써, 항구적 보존전략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님과 더불어 현대 기록물관리체제의 딜레마 중 하나인 ‘보존과 비용’의 함수관계를 생산시점부터 통제할 수 있는 효율성을 지닌다. 전문관리기관 차원에서는 중요기록물의 분산, 중복보존이 조기에 실시됨으로써 항구적 보존을 위한 사전적 안전조치를 취하게 되는 효과를 지니게 되며, 나아가 준영구이상 기록물을 생산당시의 내용적, 물리적 단위 그대로 관리되어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존전략은 전문관리기관의 평가분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심

18) 보존기간이 준영구이상으로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앞의 주 9)에 제시된 기록물 등은 자료관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록물 고유의 특성에 따른 이용주체 및 목적, 접근권의 등의 활용적 측면을 참작한 결과로, 업무수행 차원의 시각과 기록물관리 차원의 시각을 효율적으로 결합시킨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원규, 『한국 기록물관리제도의 이해』, 77쪽.

화된다. 전문관리기관의 평가분류 업무는 준영구이상 기록물에 대한 보존전략을 최종적으로 수립함과 동시에 보존매체수록, 수리, 복원 등의 실질적 보존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단계로, 보존과 관련하여 기록물의 내용 및 형태를 분석하는 이원적 구조를 형성한다. 준영구이상 기록물의 내용을 분석하는 보존가치 평가분류는 기록물에 내재된 사료적, 증빙적, 업무참고적 가치를 1~3등급으로 구분한다. 물론 3개의 가치등급은 해당 기록물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측정기준은 아니며, 보존분류를 통해 선별된 중요기록물에 대한 초보적 이용정보를 대략적으로 구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¹⁹⁾ 여기에는 보존가치의 순위에 따라 보존의 안전성 및 매체수록, 수리, 복원 등의 순서에 우열을 기함으로써 향후의 열람·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상태평가분류는 물리적 손상분석과 현상적 손상분석의 이원적 구조를 이룬다. 종이류 및 오디오·비디오류, 사진·필름류별로 분석하는 이러한 상태평가는 현재의 물리적 상태만이 아니라 기록재료의 물리적 보존성 및 미래의 훼손가능성까지 판단하는 항구적 보존에 대한 적극적 의지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²⁰⁾

평가와 보존전략과의 연계가 제공하는 '보존과 비용'의 합리성은 항구적 보존량의 확대란 효과를 유발시킨다. 생산단계에서의 보존분류시 비치기록물, 대체보존 기록물 등과 같은 준영구기록물은 자료관 내지 특수자료관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장소를 지정함으로써 중요기록물의 보존을 분담시키고, 또한 증빙자료 내지 업무참고적으로 활용기

19) 같은 책, 299쪽.

20) 평가와 보존전략을 연계시킨 평가분류 요소로는 이외에도 상대평가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전문관리기관에서 보존되는 기록물 가운데에서의 상대적 중요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일반적으로 30 : 40 : 30의 비율로 구성되는 상태평가 요소들은 '비용대 보존'의 합리성을 제고시키는 전문관리기관 자체의 보존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이 비교적 짧고 역사적 가치 및 열람빈도가 낮은 기록물은 매체만 보존하는 것으로 보존방법을 지정함으로써, 결국 전문관리기관의 보존부담을 경감시킴과 아울러 보다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보존량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행 법령이 구상하는 선별방식은 전통적 3단계 체제론에 바탕을 둔 선별방식을 현실적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면서도, 기본적인 논리를 여타 장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방식에서는 기록물의 생산과 동시에 생산자적 시각과 전문관리기관의 시각을 병행하여 반영한 가치의 선별이 이루어지게 되며, 나아가 평가는 생산 본래의 목적이 소멸된 비활용단계에서의 독자적 업무가 아닌,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기록물관리 전과정에 걸친 유기적 업무로 재편되게 된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기록물 선별에 투영되는 가치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기존의 이론에서 보여주는 선별과 가치기준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볼 때, 법령에서 의도하는 가치의 범주 문제는 평가체제의 적합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근본 과제이기 때문이다.

4. 평가의 준거

1) 가치의 범주

현행 법령에서는 평가와 관련된 가치개념을 사료적 가치, 증빙자료적 가치 및 업무참고적 가치의 세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사료적 가치는 특정 대상의 연혁 내지 변천사 등 역사연구의 대상이 될 내용적 범주를 말하고, 증빙자료적 가치는 특정인 및 특정대상과 관련된 사안의 증명에 관련된 내용을 그리고 업무참고적 가치는 업무지침 또는 참고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그 내용적 범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범주는 생산목적 본래의 기록물 특성을 분석하는 요소와 함께, 생산목적 이외의 확대된 가치를 분석하는 요소 양자를 모두 포괄한다. 즉 업무참고적 가치가 생산자적 시각에 중점을 둔 전자의 범주라면 사료적, 증빙자료적 가치는 향후의 이용자에 초점을 맞춘 후자의 범주라 할 수 있다.

가치개념을 생산자 중심에 둘 것인가 혹 기록의 생산목적과는 무관한 잠재적 이용자에 둘 것인가, 또한 기록물의 개별적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상호유기성을 강조할 것인가는 지금까지 평가이론의 첨예한 논쟁을 주도해온 요소였다.²¹⁾ 이러한 논쟁은 영구적으로 보존할 기록물의 대상 및 목적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잣대이며, 나아가 평가란 무엇인가라는 본원적 문제에까지 확대되는 논쟁을 유발한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에 제시된 가치개념의 적합성을 재숙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쟁의 양대 조류에 대해 역사적으로 조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산목적과는 단절된 향후의 활용성에 주안점을 둔 가치개념은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셀렌버그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이는 당시 미국적 상황의 투영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미국의 기록관리 전통 및 소규모의 분산화된 기록보존체제는 20세기 이후 혁신적 변화에 직면한다. 즉 국가조직의 비대화 및 세계대전에 따른 기록물의 양적 팽창, 그리고 대공황 이후 뉴우덜정책에 따른 권력 집중의 시류 속에, 이전의 체제와는 단절된 국립기록청을 주축으로 한 대규모의

21)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출발하는 이러한 논쟁의 근원은 기록물의 본질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역사적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 논쟁에 대한 최근의 논문으로는 Durant, Luciana, *The Concept of Appraisal and Archival Theory*, *American Archivist* 57(2), 1994 및 Boles, Frank & Greene, Mark A., *Et Tu Schellenberg? Thoughts on Dagger of American Appraisal Theory*, *American Archivist* 59(3), 1996을 참조.

중앙집권적 기록보존체제를 형성시켰으며, 이전의 관행으로는 전연 불가능한 대량의 기록물을 통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별장치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²²⁾ 선별범위는 당시의 보존시설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경제학의 한계효용법칙이 도입되었으며, 선별의 구체적 기준은 생산자의 임의적 판단보다는 정형화된 가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량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일반적 가치 기준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바로 여기서 기록물의 가치를 측량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대량의 기록물을 기계적으로 선별, 관리하는 미국식 평가체제가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성립된 쉘렌버그의 가치개념은 기록물을 생산한 본래의 목적을 의미하는 1차적 가치(Primary Value)와, 생산시효가 소멸된 이후 증거 및 역사, 연구 등의 방면에 이용되는 2차적 가치(Secondary Value)로 크게 구분된다. 이러한 양분된 가치구분은 기록물에 대한 양분된 개념 정의로 이어진다. 우선 생산목적 본래의 1차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은 ‘레코드’(Record)로 그리고 생산목적과는 별개의 2차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은 ‘아카이브’(Archive)로 정의 내린다. 여기서 의미하는 아카이브는 “참고 및 연구상의 목적으로,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영구보존을 위해 선별된 레코드”를 의미한다.²³⁾ 레코드가 아카이브로 되기 위해서는 생산 혹은 접수된 목적 이외의 가치를 지녀야 하며, 기록물을 생산한 본래의 목적이 소멸된 이후 연구 및 기타 이용상의 목적으로 장기간 활용성을 지속할 이유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²⁴⁾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아카이브는 레코드란 전체집합 안에

22) 배영수, 「역사와 정치의 교차로 - 미국 문서관 제도의 위치 -」 『역사비평』 1997년 봄호, 1~6쪽.

23) Schellenberg, *Modern Archives*, p. 16.

24) Ibid, p. 133.

포함되는 특정원소만으로 구성된 부분집합이며, 이러한 부분집합을 규정하는 것이 평가업무의 핵심 관건이 된다.

이러한 아카이브의 개념 및 이를 선별하는 평가논리는 결국 개별적 기록물에 대한, 향후의 유용성에 바탕을 둔 가치의 차등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구기록물의 선별은 생산목적이 소멸된 비활용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생산자적 입장의 1차적 가치와 잠재적 이용자 위주의 2차적 가치는 엄격히 구분된 업무단계에서 별도로 수행된다. 또한 기록물 각각에 대한 고유가치를 중시함으로써 기록물의 본원적 속성 중의 하나인 기록물간의 상호유기성은 신중히 고려되지 않으며, 원질서원칙 역시 아카이브 단계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규정된다.²⁵⁾

이에 반해 생산목적의 본원성을 강조하는 평가이론의 근원은 아카이브의 본질에 대한 르네상스적 회귀에 그 출발점을 둔다. 고대 로마법에 근거한 관념인 ‘영속적 기억성’(Perpetual Memory)과 ‘공적 신뢰성’(Public Faith)으로 대표되는 아카이브의 본질은 가치의 중립성을 원칙으로 한다.²⁶⁾ 일회성 기록 내지 사본 등을 제외한 보존기록물은 위의 두 관념에 기초하여 동등한 가치가 부여되며, 따라서 특정 가치에 귀속된 선별 행위는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된다. 각각의 기록물에 대한 특정 기준의 가치판단은 내용적 사실성과 공신력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 생산목적

25) Ibid, pp. 190-193.

26) Duranti, "The Concept of Appraisal and Archival Theory", pp. 331-334. 영속적 기억은 기록물에 수록된 내용의 변동없는 지속적 사실성을 의미하며, 공적 신뢰성은 기록물의 사회적 기능에 관련된 개념이다. 이러한 두 관념은 당시 로마법을 기반으로 한 기록보존제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즉 국가기관인 기록보존소에 보관된 기록물은 지속적 사실성 및 내용의 공신력을 국가로부터 보증받으며, 이때 국가기관에 보관되지 않은 부수적 기록물과의 이분법적 사고가 성립된다. 바로 여기서 아카이브는 레코드로부터 선별된 것이 아니라, 보관되지 않은 기록물에 대한 상대적 개념을 의미하게 된다.

본연의 고유성을 상실케 하기 때문이다.²⁷⁾

위와 같은 사조에 뿌리를 둔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은 현대 유럽의 아카이브 정의에 전승된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젠킨슨은 문서(Document)가 아카이브로 전환되는 주요 관건을 공식적 보존내력(Official Custody)으로 규정하면서, 아카이브를 공적 활동으로 생산, 수집되어 공신력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해 보존되는 문서로 정의하고 있다.²⁸⁾ 이는 공신력있는 공공기관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존되어 온 것에 기인한 기록물에 대한 신뢰성(Authenticity) 및 내용적 진실성(impartiality), 그리고 인위적 수집이 아닌 공적 활동 중 자연적으로 축적된다는 자연성 및 전체 기록물과의 상호연관성이란 아카이브의 본질적 속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²⁹⁾ 바로 여기서 생산목적 고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평가관념이 도출된다. 생산목적과 상관없는 가치척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카이브의 본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생산당시의 배경 및 목적, 기능, 구조 등과는 무관한 장치 이용될 2차가치 위주로 특정 기록군을 한정하는 것은 아카이브의 의미를 축소시키게 되며, 따라서 평가는 개별 기록물에 인위적 가치를 부여하거나 이를 통해 특정 기록물을 선별해 내는 행위만으로 한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³⁰⁾

또한 생산목적과 분리된 개별적 가치를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은 생산기록물의 전체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간주된다. 특정 조직의 업무 수행 중 자연적으로 축적된 기록물은 상호 유기적 구조를 형성하며, 특정 조직의 행위에 대한 근거 및 사실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볼

27) School of Library, Archive & Information Studies(Univ. College London), "Theories of Appraisal", 1999, p. 3. (<http://www.ucl.ac.uk/SLAIS/projects/level1.htm>)

28) Jenkinson, Hilary, 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Problems of War Archives and Archive Making, The Clarendon Press : Oxford, 1922, pp. 9-11.

29) Ibid, pp. 4, 8-9, 151-152.

30) Duranti, "The Concept of Appraisal and Archival Theory", pp. 343-344.

때 인위적인 2차적 가치 위주의 선별은, 이러한 유기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산기관내 기록물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조한 출처주의 및 원질서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이다.³¹⁾

이를 염두에 둔다면, 평가란 인위적 가치의 유무에 따른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기록에 대한 신뢰성 및 내용적 진실성을 확보하며 생산맥락 본연의 유기적 구조를 유지, 보존하는 생산단계부터의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물의 개별적 가치보다는 출처원칙 및 생산 당시의 원질서를 반영한 상호유기성이 강조되고, 생산목적과는 동떨어진 불특정 이용자 위주의 2차적 가치보다는 생산자적 가치가 우선시되며, 평가의 주체 또한 생산자 중심으로 귀결된다.³²⁾

이러한 양방향의 평가 이론들은 향후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며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현행 법령상의 가치개념 또한 이러한 동향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법령상에 명문화한 '보존가치 평가기준' 및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에서는 역사적, 증거적 가치 등 향후 이용자 중심의 2차적 가치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참고적 가치의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생산자적 시각의 1차적 가치도 함께 투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처리과에 대한 보존기간 산정업무의 위임을 통해 생산기관 자체의 행정적 활용기간을 고려하면서도, 분류기준표상의 보존분류 항목을 통해 전문관리기관의 수

31) 이러한 측면에서 쉘렌버그의 가치평가 이론 및 아카이브 정의는 기존의 기록학 이론을 도외시한 응용적 방법론으로까지 규정되고 있다. Ibid, pp. 338-341. 한편 볼스 및 그린은 쉘렌버그의 가치평가 이론은 의도적으로 기존의 이론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미국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라며 쉘렌버그의 이론을 변호한다. 이에 대해서는 Boles & Greene, "Er Tu Schellenberg? Thoughts on Dagger of American Appraisal Theory"을 참조.

32) Jenkinson, *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 pp. 15-16.

집의지를 반영토록 한 점 역시, 이와 같은 1, 2차 가치를 모두 반영시키려는 법령상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범주의 설정은 현행 법령 이전의 영구기록물 선별관행에 대한 반향이기도 하다. 종전의 『공문서분류번호및보존기간표』를 토대로 한 평가체제에서는 일선 기관에서 파악한 행정활용 기간을 준용하여 산정된 보존기간을 기록물 건별로 적용케 함으로써, 역사적 가치 및 기타 기록물의 중요도에 대한 시각이 결여된 채 행정적, 법적 시각의 1차적 가치만을 영구대상의 선별에 반영되도록 해왔다.³³⁾ 이를 감안할 때, 법령상의 보존가치 및 보존기간 산정조항에 역사적 중요도에 따른 가치를 명문화하고 있는 점은 생산부서 차원의 시각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기록물을 영구보존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앞서 살핀 분류기준표의 보존분류 사항을 근간으로 한 영구대상 선별 논리를 염두에 둔다면, 현행 법령상의 가치개념은 역사적 가치를 기본으로 한 생산자적 가치의 동시 반영이란 이원적 구조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³⁴⁾

처리과에 대한 보존기간 산정권한의 부여는 생산자적 입장의 가치를 투영시킬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처리과의 보존기간 산정은 분류기준표의 기준사항을 참고로 하며, 분류기준표의 기준보다 하향 책정 시 전문관리기관의 재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처리과의 선정권한은 형식상의 논리로 보이기 쉬우나, 그 이면에는 생산자적 가치의 반영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 또한 내재해 있다. 우선 처리과 차원에서 준영구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될 경우 분류기준표상에 유한보존 대상으로 책정되었다 할지라도 상향된 보존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33) 김태웅,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정과 전망」, 『기록보존』 제12호, 1999, 164~165쪽.

34) 이승익, 「한국 공공분야 기록보유(Recordkeeping) 체제 전망」, 41~42쪽.

며, 또한 보존기간 및 보존장소 등에 대해서는 전문관리기관에 대한 사후 통보로 분류기준표의 사항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생산자적 시각에서도 중요기록물을 선별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현행 법령상에 제시된 가치의 개념은 향후 이용자적 관점과 생산자적 입장의 가치논리를 융합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활용단계에서 재창출되는 2차적 가치의 반영을 통해 향후의 유용성을 제고시킴과 아울러, 생산자적 입장에서 판단되는 가치를 생산자를 통해 직접 반영시킴으로써 생산 당시의 맥락 및 기능을 반영한 가치평가를 가능케 해준다. 그러면 당면사안은 각 기록물에 내재하는 고유가치를 중시할 것인가 혹은 생산맥락상의 상호유기성 보호를 통해 정보가치의 전체성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가치적용의 범주 문제로 귀결된다. 아래에서는 법령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논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가치의 적용방식

가치적용의 범주에 대한 최근 이론상의 조류는 기록물간의 상호유기성 및 생산연원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우선 개별적 가치에 대한 숙고를 통해 나타난다. 이는 앞서 살핀 아카이브의 본질에 대한 회귀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개별기록물별 가치부여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 출발점을 둔다. 즉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기록물 각각의 절대적 가치는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가치는 당대 사회의 가치관의 투영일 뿐이다. 따라서 기록물의 모든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며 이러한 상대적 가치는 당대 사회현상의 구조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⁵⁾

이러한 논리에서 당대의 주요 사회상을 정식화하는 다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의 구축이 제기되며, 평가는 개별 기록물에 대한 요소파악 방식에서 구조파악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³⁶⁾ 이는 다큐멘테이션 전략(Documentation Strategies)에서도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여기서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이슈, 기능, 주제 등에 관련된 적정 기록물군의 생산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에 따라 향후 생산되어야 할 범주가 분석되고 생산할 기록물군을 결정한다.³⁷⁾ 따라서 평가는 개별가치 중심의 선별이 아닌 상호 연관된 다변적 기관에서의 유기적 기능을 지닌 기록군의 생산을 통해 지정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며,³⁸⁾ 전략상의 세부적 내용 및 범주는 사회상 및 사회가치의 변화에 조용하게 된다.³⁹⁾

35) Booms, Han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24, 1987, pp. 69 - 107 (Boles & Young, *Archival Appraisal*, pp. 10 - 11에서 재인용).

36) 사회모델(Societal Models) 이론으로 지칭되는 봄스의 평가이론에 대해서는 김익한, 「기록물 관리체제론 및 평가분류의 새로운 흐름」, 68~70쪽을 참조. 물론 '한 사회의 최대한의 모습을 최소한의 기록물로 미래 사회에 전달'한다는 다큐멘테이션의 근본 취지를 완벽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사회현상 및 이에 대한 역사의학의 대응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명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 기록물의 중층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학제간 연구 등을 통해 최선의 다큐멘테이션을 수립해야 하며, 또한 사회적 이슈의 변화에 부응하여 재수립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pp. 96 - 97을 참조.

37) 개별가치에 근거한 평가의 대안으로 봄스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전개되고 있는 다큐멘테이션전략에 대해서는 Samuels, Helen W., "Who Controls the Past" *American Archivist* 49(2), 1986; Hackman, Larry J. & Warnow-Blewett, Joan, "The Documentation Strategy Process: A Model and a Case Study" *American Archivist* 50(1), 1987; Cox, Richard J., "A Documentation Strategy Case Study: Western New York" *American Archivist* 52(2), 1989를 참조.

38) Walters, Tyler O., "Contemporary Archival Appraisal Methods and Preservation Decision-Making" *American Archivist* 59(3), 1996, pp. 330 - 331.

구체적 방법론 면에서는 다큐멘테이션전략과 다소 상이한 측면을 지니지만, 기능평가 또한 기록물에 내재된 상호유기성 및 생산연원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물 자체는 가치의 근원이 아니라 사회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가치를 담는 그릇일 뿐이며, 따라서 생산된 당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기록물이 지니게 되는 상징적 의미 및 향후에 나타날 잠재적 가치를 한정하는 것이 평가의 궁극적 목표로 규정된다. 이러한 대전제 하에 기능평가에서는 국가를 정점으로 한 다변적 조직체를 사회상의 구체적 실체로 설정한 후, 상부 구조로서의 조직체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는 하향식 접근방법을 도입한다. 즉 전체 조직의 구조 및 임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회적 중요도의 견지에서 기관별 서열화를 책정한 다음, 각 기관의 업무와 기능분석을 통해 기록물을 구조적으로 연결시키는 평가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⁴⁰⁾

현행 법령상의 평가조항 역시 이러한 동향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골격을 구비하고 있다. 위의 동향에서는 기록물에 내재된 본원적 가치를 각각에 수록된 내용보다는 기록물이 생산된 구조적 상황 속에서 구체화하며, 해당기관의 구조 및 기능에 기초하여 기록물이 유기적으로 조직되고 나아가 전체 구조 속에서의 상호연관성을 증대시킨다. 현행 분류기준표의 운영 논리 또한 이에 상응하는 측면을 지닌다. 우선 분류기준표의 운영은 해당 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업무분석에 기초하며, 따라서 업무기능상의 가치에 기록물의 가치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게 된다.⁴¹⁾ 또한 기본적으로 분류기준표는 해당 기관의 업

39) Bellardo, Lewis & Bellardo, Lynn Lady, *A Glossary for Archivist,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s Manager*, p. 12.

40) 기능평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pp. 51-64 및 Terry Cook, "Mind Over Matter: Toward a New Theory of Archival Appraisal" *The Archival Imagination: Essays Honour of Hugh, A. Taylor* ed. by Barbara Craig, 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Ottawa, 1992를 참조.

무기능 및 출처를 반영한 기록물간의 상호유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법령 이전의 기능별 십진분류방식과 달리, 공공기관의 직제상 최하 단위이자 업무처리의 기초단위인 처리과를 기준으로 조직분류를 시행하고, 여기에 해당업무에 대한 최하 기능단위인 단위업무를 기준으로 한 기능분류를 융합시킴으로써 기록물의 조직적 생산배경 및 기능적 연원과 기록물 실체를 연계시킨 평가를 가능케 하며, 나아가 단위업무간 관련성에 기초하여 처리과단위, 실·국단위, 기관단위 및 최종적으로는 국가적 견지에서 기록물간의 전체성을 유지한 영구대상의 선별논리를 적용시킬 수 있게 된다.

단위업무별 보존기간의 책정 또한 개별적 가치선별 논리를 지양케 한다. 단위업무는 해당 기관내 업무기능의 최소단위이자, 기록물이 생산된 본래의 목적과 수행기능 등을 함축하는 가장 구체적인 기록물의 생산배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위업무를 기준으로 분류기준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여기서 생산된 기록물을 상호 연계시켜 기능적으로 상향 통합되는 논리구조를 형성시킨다. 이를 볼 때 분류기준표상의 단위업무별 보존기간 책정논리는 개별 기록물별 가치의 산정이 아닌, 조직 및 업무기능에 따른 차등화된 가치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생산 이전부터 영구대상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방식 또한 현행 법령 속에 내재해 있다. 각 기관에서는 “역사자료의 보존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그 과정 및 결과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결재기록 위주가 아닌 업무활동 전과정에

41) 이승익, 「기록물관리체제에서의 기록물분류기준표제도의 성격과 운영방안」 『기록물평가분류워크샵자료』, 2001, 1쪽.

대한 기록생산을 강제하고 있으며, 또한 단위업무를 통해 업무기능과 기록생산을 연결시킴으로써 업무활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 문서화'를 지향케 하고 있다.⁴²⁾ 그리고 중요정책이나 사안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직접 세부 범주를 명문화시켜 영구대상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전문관리기관 시각에서 생산되어야 할 범주를 단위업무별로 분류기준표상의 보존기간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생산 이전부터 항구적 보존대상의 범주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동향을 정교화할 수 있는 방안은 수집정책의 역량 강화로 귀결된다. 여기서는 항구적 보존대상의 선정이 업무활동이 종료된 비활용단계에서의 개별기록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 이전부터 그 구체적 범주가 구조화 집산화되며, 따라서 선별(Selecting)보다는 수집(Collecting)이 평가의 주요 요소로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앞서 언급한 현행 평가체제상의 수집강화 요소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전문관리기관에서 수립하는 수집정책의 근간은 기본적으로 분류기준표에 의해 실현되며 분류기준표의 제정 권한 또한 전문관리기관에 위임된 점을 염두에 들 때, 기록물간의 상호유기성 및 생산연원에 기반한 선별은 해당 기관 및 나아가 사회구조, 이슈, 역사적 동향 등에 따른 가치의 차등화를 분류기준표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관리기관의 분석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⁴³⁾

42) 이승익, 「한국 공공분야 기록보유(Recordkeeping) 체제 전망」, 34~38쪽.

43)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자 전문관리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의 업무조직을 수집기능 중심으로 재편한 것도 이와 같은 최근의 평가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수집은 평가와 전략적 지위를 공유한 전문관리기관의 핵심업무로 부각되며, 수집을 담당하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현행 평가체제에서 핵심 축을 형성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원규, 「공공기록물의 수집·이관과 아키비스트의

물론 개별 기록물별 선별 논리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행 법령상의 평가분류 개념은 분류기준표를 근간으로 한 선별체제에서 개별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간주된다. 준연구이상의 기록물에 대해 내용 및 상태 등을 분석하는 평가분류는, 앞서 살핀 항구적 보존 전략의 효율화 측면과 더불어 개별 기록물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요소 또한 내재해 있다. 우선 단위사안별 내용분석을 통해 역사적, 사회적 가치 및 기타 이용가치 등 제2, 제3의 가치를 발굴함으로써 비활용단계에서 개별 기록물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내용 및 상태평가뿐만 아니라 열람, 활용빈도를 고려한 매체수록 방식 및 수리, 복원 등의 차별화를 통해 활용성을 제고시키고, 기록물철별 상세한 내용분석을 통해 추출된 역사주제어 및 추가기술 등을 바탕으로 검색, 열람 등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한다.

전체적 선별의 틀을 정교화할 수 있는 요소 또한 내재해 있다. 현행 법령상 평가분류는 기록물관리 전과정 속에서 실제 생산된 기록물의 내용을 분석하는 유일한 업무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곧 개별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조직 내에서의 업무기능 및 가치를 기록물 실물을 통해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절차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항구적 보존대상에 대한 수집 업무가 분류기준표를 근간으로 하는 한 기록물 실물을 통한 분석결과는 분류기준표에 반영할 수 있으며, 결국 분류기준표를 토대로 하는 선별의 틀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수행될 표준평가표 체제를 통해 보다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서는 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를 토대로 평가분류를 시행하며, 이에 대한 결과인 표준평가표에는 실제 단위업무의 내용 및 단위업

역할」, 3~46쪽을 참조.

무내 기록물철의 종류, 세부내용 등이 반영된다.⁴⁴⁾ 따라서 업무기능 단위별로 실제 내역파악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역으로 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별 보존분류 사항에 반영시킴으로써 가장 구체적인 생산기능에 대한 가치의 차등화를 정교화시키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기록물의 내용에 대한 이해 및 분석 역량이 평가분류의 관건으로 떠오른다. 실제 평가분류 대상 기록물은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된 각기 다른 내용적 특성 및 전문적 영역을 지닌 것들이며, 또한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으로 책정된 중요기록물의 가치를 다시 세분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분류 제도의 완성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전문관리기관 아키비스트의 역량 제고라는 당위론적 결론과 함께, 관할 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사전분석 강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평가분류 대상에 대한 사전분석은 현재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다. 우선 분류기준표의 보존분류 사항을 통해 각 기관별 평가분류 대상의 범주가 단위업무별로 정해져 있으며, 또한 생산현황 보고를 통해 평가분류의 시행 이전에 실질적으로 확정된 대상을 단위사안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분류기준표 제정을 위한 단위업무 조사과정에서 각 기관의 조직체계는 물론, 상호 유기적 기능 및 처리과 수준에서의 업무 내역 파악이 가능하며, 기록물 실물이 이관되기 최대 9년간의 시간동안 기록물을 통해 수행된 사안의 사회적 의미 및 이에 대한 학계, 언론계 및 사회적 동향을 분석, 평가분류에 반영할 수 있다.

보존기간 산정방식을 통해서도 개별적 가치의 발굴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처리과에서 실시하는 실제 보존기간의 산정이 분류기준표상의 기준과 달리 유한보존 대상으로 하향 조정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전문관리기관의 재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단위업무내 보존

44) 남희숙, 「기록물 평가실무와 발전방안」 『기록물평가분류워크샵자료』, 2001, 3쪽.

기간 편차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준연구이상의 상향조정은 가능케 하고 있어 조직상의 기능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단위업무 내에서도 독자적으로 중요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개별적으로 선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폐기제도에서도 살피볼 수 있다. 현재 폐기는 단위사안별로 수행케 함으로써 기록물철별로도 함유할 수 있는 2차적 가치의 선별이 가능하며, 또한 폐기절차를 전문요원에 의한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에 의한 심의 등 두 단계로 강화시킴으로써, 단위업무 중심의 보존기간 책정에서 사장되기 쉬운 개별적으로 가치를 발하는 기록물을 선별해내는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에 내재해 있는 가치의 개념 및 범주는 최근의 이론적 동향을 수용하면서도 상호 융합시킨 성격을 보여준다. 현행 평가체제를 기반으로 생산자적 입장의 법적, 행정적 가치와 전문관리기관 시각의 향후 활용적 가치의 동시투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보존분류 및 분류기준표 등의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에 대한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치적용의 범주 또한 조직구조 및 업무기능에 기초한 단위업무별 선별을 지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별적으로도 존속할 수 있는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선별의 장치들은 결국 후대에 전승할 기록물의 범주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현행 법령은 선별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에서 구상하는 평가체제는 최근 기록학의 이론적 사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현실적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이는 기록학의 후발주자로서 외국의 앞

선 경험 및 여기서 생성되어 온 다양한 이론들의 수용이 용이하다는 점에 기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고 중요기록물을 후대에 전승하려는 적극적 의지의 표출 결과이기도 하다. 본고의 분석을 마무리한다면, 평가와 관련된 기본적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이러한 하드웨어의 운용을 위한 정교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일 것이다.

물론 평가제도의 정교한 운용을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안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현행 법령상의 평가조항들은 평가와 관련된 근거 규정 및 기본적 원칙만을 제시한 성격이기 때문이다. 각 전문관리기관 및 대상기록물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 평가의 시행은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세부지침은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분류기준표의 제정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행 평가체제의 기본 틀로 파악할 수 있는 분류기준표의 제정 권한은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및 특수기록물관리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각 기관 및 대상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모든 전문관리기관으로 분류기준표의 제정 권한을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자체의 진전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운동이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분류기준표 자체의 완성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법령체제에서 분류기준표는 기록물관리 전과정을 조율하는 메인보드로 구상되었다. 항구적 보존대상의 틀과 함께 이를 통한 수집·이관의 근거가 규정되며, 생산기록물 전체의 분류·정리체계를 사전에 확정시키는 등 모든 기록물관리 과정은 분류기준표를 주축으로

유기적 메카니즘을 형성토록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분류기준표에 부과된 역할이 지대한 만큼 그 시행착오가 야기할 혼동 또한 지대할 것이다. 평가제도의 성패 역시 분류기준표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때, 현재 제정중인 분류기준표의 완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정 당사자는 물론 관련 학계, 단체 등과의 협력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분류기준표가 지향할 구체적 기록관리모델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⁴⁵⁾

분류기준표를 통한 중요기록물의 선별체제 및 이와 연동된 평가분류체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이를 통해 창출된 영구기록물의 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활용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기술체제의 확립이다. 현행 법령에서도 기록물의 생산등록 단계부터 각 관리단계에 걸쳐 관련 정보를 누적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전문관리기관에서는 이를 전산목록으로 작성·비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나름의 검색, 이용체계를 구비하고 있다.⁴⁶⁾ 그러나 다원화되고 조직화된 현

45)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분류기준표의 제도적 의미 및 향후의 운용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선구적 연구들이 최근 들어 제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항녕, 「평가를 축으로 한 기록물 통합관리체제」 및 이승역, 「한국 공공분야 기록보유(Recordkeeping) 체제 전망」; 「기록물관리체제에서의 기록물분류기준표제도의 성격과 운영방안」을 참조.

46) 현행 법령하의 각 관리단계에서 생산되는 목록의 종류 및 내용항목에 대해서는 김연주,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의 기록물 목록항목의 검토- ISAD(G)와 관련하여 기술제도 도입의 전망에 대한 모색-」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제12회 월례연구발표회 발표문, 2001을 참조. 현재 법령속에서는 기술과 관련된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다. 물론 기술제도를 법령에까지 명문화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ISAD(G)를 필두로 하는 기술표준화 방안이 전세계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술제도에 대한 근거규정 및 표준화방안의 방향성 정도는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기록보존소운영세칙 내지 향후 설립될 각종 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지침에 그 구체적인 방

대 기록물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 방법론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장치로는 분명 큰 제도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현재 ISAD(G)를 비롯한 기술 체제의 화두는 출처주의에 입각한 기록물의 조직화, 계층화 구현 및 이를 통한 유기적 정보구조의 창출이다. 출처의 조직구조와 기록물 구조의 연동을 통한 중층적 정보제공이 기술 및 검색체제의 근본 지향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염두에 둘 때, 기본목록 및 세부목록의 정보제공에 한정된 현 방식은 분명 자체내의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현행 법령상의 틀 속에서도 기록물의 중층적 구조를 형성시키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분류기준표를 바탕으로 한 처리과 중심의 출처별 분류체계⁴⁷⁾를 바탕으로, 업무기능에 기초한 기능별 분류를 통해 대기능으로부터 단위사안에 이르는 다섯 단계의 계층구조를 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이는 등록번호와 함께 부여되는 고유의 분류번호에 의해 구체화됨으로써 생산등록시부터 출처 및 기능에 연원한 중층적 구조를 자동적으로 생성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의 생

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제도 확립에 있어 현행 법령체제 하에서 생산되는 각종 목록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재 모색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은 한국적 기술제도의 확립에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은 현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분류기준표를 기반으로 하는 분류제도 및 출처의 문제, 계층성의 구현 등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47) 현행 법령상의 분류체계가 출처의 원칙을 원론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세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각 부처의 처리과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업무들을 그 기능에 기초하여 단위업무로 편제하고 나아가 단위업무군, 소기능군, 중기능군으로 상향 통합하는 작업은, 현재 분류기준표의 제정 권한상 정부기록보존소 아키비스트의 인위적 편제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분류기준표의 분류체계가 원론적 출처원칙에 따른 분류체계보다 생산연원 및 구조, 유기적 연관성 등을 어느 정도 창출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산연원 및 구조적 파악을 실물화시키는 기술제도의 도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층구조는 현실적으로는 활용이 어려운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신기루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정리·기술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기록물의 구조화를 통한 관리상의 통제 그리고 이용자를 위한 구조화된 정보의 제공임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에서는 전자의 목적에만 치중했을 뿐 후자를 실현시키는 장치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아카이브에 대한 전략이 평가 및 보존차원을 넘어 이용, 열람 등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임을 감안한다면,⁴⁸⁾ 또한 영구기록물 보존의 궁극적 목적이 향후의 활용임을 상기한다면, 분류기준표를 통한 분류(Classification) 차원을 넘어 전문관리기관 단계에서도 영구기록물에 대한 정리 및 기술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평가와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가령 단위업무의 기능적 포괄성 문제라든지, 기능분류와 출처원칙의 연계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처리과 기준의 출처분류 한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행 평가조항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좀 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48) Menne-Haritz, "Access-the Reformulation of an Archival Paradigm", *Archival Science* 1, 2001, pp. 57 - 82.

Abstract

A Theoretical Examination on Appraisal System of Public Records in Korea : Comparative Study on Archival Selection and Concepts of Values

Kim, Myoung-hun

Appraisal is a basic archival function that analyzes values of records and determines the eventual disposal of records based upon their archival values. In Korea, this appraisal concept introduces in earnest through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PRA,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with which Korean record management systems settle inflexibly. I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appraisal system in this Act with it in archival science.

In PRA Act, appraisal system is founded on the Tables of Transaction for Records Scheduling(TRS, 기록물분류기준표) through which disposal activities of all records are defined in a concrete form. In this system, selection of archival materials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important function of record center is carried out by record creators and archival institutions; Primary value between currenty and semi-currenty, and secondary value between semi-currenty and non-currenty are reflected at the same time.

In view of values, this appraisal system intends to separate reasonably consideration for continuing utility of achives from current use of records throughout agencies duration. Ultimately, appraisal based upon TRS makes up not separated management

course but organic courses reflecting the Continuum of Care.

Of course, this appraisal system makes up the deficiency partially. TRS regarded as 'mainboard' of current appraisal system will have to be enacted elaborately. And appraisal strategies of electronic records must set up in detail in PRA Act and TRS. Lastly, arrangement and description concepts immanent in TRS will have to supplement in archival institutions.